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1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03월 05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당직과 비상근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7조 제4항 후단 규정 중 “그 밖의 방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급기준 등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“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를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생략)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<u>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, <u>그</u> <u>밖</u> 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<u>관하여</u> ----- -----	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, <u>지</u> <u>급</u> 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<u>관하여</u> ----- -----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”를 “근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”을 “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”로, “1주일”을 “6주일”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전단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·저축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않는다”를 “않되,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2호 중 “국회·법원·검찰”을 “국회·법원·검찰·경찰”로 한다.

제24조제9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6항(중전의 제15항)을 삭제한다.

⑨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“어린이집등”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3. 미성년자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

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
4.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
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 본문 중 “토요일, 공휴일”을 “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, 공휴일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토요일등”을 “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<u>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, <u>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</u>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<u>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</u>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<u>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</u>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<u>1주일</u>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근무</u> -----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<u>근무한 날</u> ----- ----- <u>6주일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연가계획과 허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</p>	<p>제20조(연가계획과 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활용하지 <u>아니할</u>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<u>없다</u>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제21조(연가일수 공제) ① 결근 일수, 정직 일수,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 (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에서 공제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<u>않는다</u>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않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없으며,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·저축한다.</u>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연가일수 공제) ①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않되,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공가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무와 관련하여 <u>국회·법원·검찰</u>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</p> <p>⑨ <u>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 <p>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<u>5일</u>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⑪ ~ ⑫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국회·법원·검찰·경찰</u> -----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⑩ ----- ----- <u>1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⑪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</p> <p>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</p>	<p>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</p> <p>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</p> <p>3. 미성년자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⑭ (생략)</p> <p>⑮ <u>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⑯ (생략)</p> <p>[별표 5]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(제24조의2 관련)</p>	<p>다)에 동행하는 경우</p> <p>4. <u>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</u></p> <p>⑭ <u>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</u></p> <p>⑮ (현행과 같음)</p> <p>⑯ <u><삭제></u></p> <p>⑰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5]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(제24조의2 관련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</p> <p>가. 소속기관의 장은 <u>토요일, 공휴일</u>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(이하 “토요일등”이라 한다)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나. <u>토요일등</u>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1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</p> <p>가. ----- <u>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, 공휴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<u>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